

## Chubb One-Day레저보험(등산플랜) for ( )파트너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-상해/기타
2. 보험종목의 명칭 : Chubb One-Day레저보험(등산플랜) for ( ) 파트너
3. 보험의 목적
  - 1) 피보험자의 신체
  - 2) 법률상의 배상책임
  - 3)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
4.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구분	보험기간	보험료납입주기
(기본계약) 5대골절(목/흉추/요추/골반/대퇴골)진단비보장 (기본계약) 골절(치아파절제외)진단비보장 (기본계약) 골절수술비(동일사고당 1회한)보장 (기본계약)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 수술비(동일사고당 1회한)보장 (기본계약)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(동일사고당 1회한)보장 (기본계약) 김스치료비(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)보장 (기본계약) 상해 응급실내원(응급)치료비보장	1일(24시간)	일시납

주)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
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 

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7. 기타
  - 1) 판매상품의 명칭에 관한 사항
 

판매상품의 명칭은 “Chubb One-Day레저보험(등산플랜) for ( ) 파트너”로 함.  
 다만, ( ) 부분은 동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 명칭으로 한정함.
  - 2)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
 

이 보험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한다.

    - ① 계약자
      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전자금융업자 또는
      -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, 통신판매업자, 통신판매 중개업자

- ② 피보험자
  - 상기 계약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 중 해당 보험서비스를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 또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신청한 자
- 3)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
  - ① 대상자 : 만 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
  - ② 판매금지 :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
- 4)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
  - ① 다수구매자(피보험자)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보장내용\*으로 판매
    - \* 불완전판매우려가 적고 보험사고 입증 및 보험금 지급절차가 단순한 담보 ( 예)상해사망
  - ② 보험료는 계약자(상품판매자)가 전액 부담\*
    - \* 보험료 부담이 피보험자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인수
  - ③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주요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피보험자 확인\*를 받은 경우 인수
    - \* 가입전설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입후 설명 및 확인
- 5)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
  - (1)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   - ①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    -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  - (2) 기타
    - ①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    -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